

## 부산광역시사하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94
----------	----

제출년월일 : 2004. 2. 18.

제 출 자 : 사하구청장

### 1. 제안이유

지방세법 및 동법 시행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동법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기타 법령개정에 따른 용어를 정비하고자 함

### 2. 주요골자

- 지방세 고지서등 서류의 송달을 현재 교부 및 등기우편에 의하도록 한 것을 원활한 송달을 위하여 고지서 1매당 합계세액이 3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보통우편으로도 송달할 수 있도록 하고(안 제6조의2)
- 과세전 적부심사위원회의 위원을 종전에는 지방세에 관한 전문지식이 있는 공무원과 외부전문가를 동수로 하던 것을, 앞으로는 심사의 객관성을 높이기 위하여 외부전문가가 과반수가 되도록 함 (안 제14조)
- 기타 법령정비에 따른 용어를 정비함(안 제7조, 안 제9조, 안 제23조)

### 3. 관계법령

- 지방세법 제3조

## 부산광역시사하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사하구세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의2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법 제51조의2제1항 단서조항의 규정에 의한 방법이라 함은 우편법시행규칙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보통우편방법에 의한 송달방법을 말한다. 이 경우 고지서의 우편발송을 증명할 수 있도록 송달부를 작성하여 우체국의 우편물접수인을 날인 받도록 하여야 한다.

제7조제5항중 “신고납부기한”을 “신고 및 납부기한”으로 한다.

제9조 본문중 “영 제30조”를 “시행규칙 제16조”로 한다.

제14조제2항중 “위원장 1인과 6인이내의 위원으로”를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10인 이내의 위원으로”로 한다.

제14조제3항 내지 제6항을 동조제4항 내지 제7항으로 하고, 동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동조제5항(현행 제4항)중 “재적위원”을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구성원”으로 한다.

③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과 위원장이 매회의마다 지정하는 6인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외부인사가 4인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제23조제2항중 “건축물 또는 건물과 건축물의 특수한 부대설비를”을 “영 제75조의2의 건축물 및 제76조의 시설물을”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b>제6조의2(서류의 송달방법)</b> ①~② (생략)</p> <p style="text-align: right;"><u>&lt;신설&gt;</u></p>	<p><b>제6조의2(서류의 송달방법)</b> ①~② (현행과 같음) ③법 제51조의2제1항 단서조항의 규정에 의한 방법이라 함은 우편법시행규칙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보통우편방법에 의한 송달방법을 말한다. 이 경우 고지서의 우편발송을 증명할 수 있도록 송달부를 작성하여 우체국의 우편물접수인을 날인 받도록 하여야 한다.</p>
<p><b>제7조(천재 등의 기한의 연장)</b> ①~④ (생략) ⑤신고납부기한의 연장이 결정되었을 경우의 당해 가산세는 그 연장기간이 만료된 다음날부터 적용한다.</p>	<p><b>제7조(천재 등의 기한의 연장)</b> ①~④ (현행과 같음) ⑤신고 및 납부기한----- -----</p>
<p><b>제9조(징수유예신청)구세에 관하여 징수유예를 받고자 하는 자는 영 제 30조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b></p>	<p><b>제9조(징수유예신청)-----</b> -----<u>시행규칙</u></p>
<p><b>제14조(과세전적부심사위원회)</b> ① (생략) ②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6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위원은 지방세에 관한 전문지식이 있는 구 소속 공무원과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춘 외부인사를 동수로 하여 구청장이 지명 또는 위촉한다. 1.~5. (생략)</p>	<p><b>제14조(과세전적부심사위원회)</b> ① (현행과 같음) ②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 ----- ----- ----- 1.~5. (현행과 같음)</p>

현 행	개정안
<p style="text-align: center;"><u>&lt;신설&gt;</u></p> <p>③ (생략)</p> <p>④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p> <p>⑤~⑥ (생략)</p> <p><b>제23조(건축물에 대한 신고의무)</b></p> <p>① (생략)</p> <p>② 납세의무자가 <u>건축물 또는 건물과 건축물의 특수한 부대설비를 설치하였을 때에는 설치년월일, 종류, 시설개요를 기재한 신고서를 사실 발생일부터 30일이내에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u></p>	<p>③ <u>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과 위원장이 매회의마다 지정하는 6인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외부인사가 4인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u></p> <p>④ (현행 제3항과 같음)</p> <p>⑤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구성원----- -----.</p> <p>⑥~⑦ (현행 제5항 및 제6항과 같음)</p> <p><b>제23조(건축물에 대한 신고의무)</b></p> <p>① (현행과 같음)</p> <p>② --<u>영 제75조의2의 건축물 및 제76조의 시설물을</u>----- ----- ----- -----.</p>